

부산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52757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5275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037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최영준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C

변론 종결2022. 3. 30.

판결 선고2022. 4. 20.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037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기계부품 단조 및 매매용역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3D프린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7. 피고와, 피고로부터 D 3D프린터 2대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프린터'라 한다)을 대금 1,45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납기준수)

'을(피고)'은 '갑(원고)'이 발행한 주문서에 의거 제시된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할 책임을 진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할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납품된 물품의 소유권은 물품검사 및 검수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시점에 '을'로부터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대금 지급 및 시기)

장비명 : D 3D프린터 2대

소재: SUS3161L POWDER 200KG

전기로 : 2대

분말재활용 sieving기 : 2대

일금: 1,455,200,000 VAT별도

1. 계약금의 지급은 본 계약 완료 직후 '갑'이 계약과 동시에 D 3D프린터 2SET의 계약금액 700,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의 지급은 장비의 입고검수 완료 직후 '갑'이 VAT포함 잔액 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선박부품 제조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력'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상호간의 권한과 의무)

가. 양 기관(원고와 피고)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선박부품 시장 육성을 위하여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관련부처 홍보활동, 고객사 발굴, 영업 및 홍보활동 등 3D프린팅 선박부품 공급 활성화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나. 피고는 그간 수행해온 조선 해양 및 국방 부품 3D프린팅 연구 과제를 통하여 축적된 선박용 주조 부품의 3D프린팅 제조 기술을 원고와 공유하여 DfAM Design, 출력기술 등 외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다. 원고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18. 12. 28. 3억 원, 2018. 12. 31.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비 납품대금 잔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5. 7.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5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E을 관리인으로 하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2021. 11. 15. 위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최종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린터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1) 공통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특정물 매매계약이고 계약 당시 달리 이 사건 프린터의 인도 장소를 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프린터 공급의무는 민법 제46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인 피고 회사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고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위 프린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이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프린터에 대한 물품검사 및 검수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프린터 공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프린터 중 1대만을 공급받겠다면서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피고 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위 프린터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입고검수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프린터 공급의무가 지체되었더라도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프린터에 대한 계약금 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프린터 중 1대를 7억 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프린터 중 1대는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프린터 1대의 대금에 상당하는 위 계약금 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프린터 공급의무 이행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프린터의 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금천세무서장의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계약서의 문언, 거래통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프린터를 원고 회사의 영업소 내지 공장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계약금 최종지급일인 2018. 12. 31.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1. 31.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소 내지 공장'에 이 사건 프린터를 인도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이는 이 사건 프린터가 '피고 회사의 소재지'에서 입고검수 절차를 거침으로써 인도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프린터의 공급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조선기계부품 단조 및 매매용역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린터를 공급받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부품을 제조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3D프린터의 제작 외에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부품을 출력하고 판매하는 영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3D프린터를 이용한 선박부품 등의 출력물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와 3D프린터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지배 하에서 이 사건 프린터를 이용하여 선박부품 등을 생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고 회사의 영업소 내지 공장에서 이 사건 프린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것이 작업공정 등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② 이 사건 계약의 처분문서인 '장비 납품계약서(갑 제2호증)'는 위 계약이 이 사건 프린터의 '납품'에 관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납품된 물건의 소유권은 물품검사 및 검수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호에서는 장비의 입고검수 완료 직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품'의 사전적 의미는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주는 것'인 점, '입고' 역시 장소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점, 위 계약서 제4조, 제6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프린터를 납품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소 내지 공장으로 입고하면 원고는 이를 검수한 다음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프린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위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프린터 공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프린터를 채권자인 원고 회사의 영업소 내지 공장에 급부하여야 하는 지참채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이 특정물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프린터에 대한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한국 최초로 선박 부품 3D프린팅 사업에 도전하는 원고에 맞춰 특정 제품에 3D프린팅 프로그램을 일부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피고가 원고의 특정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이 사건 프린터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인도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특정물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프린터를 피고 회사의 소재지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프린터의 현존 및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프린터의 현재 보관 현황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프린터를 피고 회사의 소재지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프린터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민법 제189조는 점유개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3D프린팅 기술 및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린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원고 회사의 본점은 부산에, 원고 회사의 공장은 경남 함안군에 각 위치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본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프린터를 활용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원고가 굳이 이동상의 불편함과 사업상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프린터를 피고 회사 소재지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기로 하였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거래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프린터의 인도 장소를 어디로 보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린터를 납품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해외영업담당이사 F이 2019. 1. 3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프린터의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위 방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린터의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를 완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는 이 사건 프린터의 소유권 이전과 납품대금 잔금 지급의 중요한 전제사실임에도 아무런 서류의 작성 없이 구두로만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3D프린터 납품에 앞서 이를 활용한 거래처 확대를 위해 피고에게 3D프린터의 종류 및 방식, 피고의 설비현황, 3D프린터로 제작한 샘플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가 2019. 6. 20. 작성한 '이 사건 프린터의 입고검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1호증)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한 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프린터의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⑥ 한편, 피고는 2018. 12. 28. 공급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 품목을 'G 3D프린터 계약금', 수량을 '2'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 3. 5. 위 항목 중 품목을 'H 3D프린터', 수량을 '1'로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린터 중 1대를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프린터 중 적어도 1대의 공급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프린터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0.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10. 18.까지 이 사건 프린터를 납품하라'는 취지로 최고하였고, 2019. 10. 18. 재차 2019. 10. 22.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프린터의 납품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행지체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1)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프린터 공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프린터 중 1대만을 공급받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린터를 인도(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프린터에 대한 물품검사 및 입고검수의무와 잔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프린터를 공급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프린터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프린터 공급의무의 이행기인 2019. 1. 31.부터 9개월이 지난 2019. 10. 18.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양도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행거절 등 채권자지체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추인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민기

판사임상민

판사김영환